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8년 10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6.7% 증가(전월대비 0.4%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6.7%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0.4%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3.7%), 통신·방송장비(-8.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28.6%), 반도체(14.7%), 기계장비(10.2%)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함(전월대비 0.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8.2%), 도소매(5.7%) 등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함(전월대비 0.3% 증가).

#### ◆ 2018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9.4%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2.3%), 의복 등 준내구재(8.0%),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늘어 5.0% 증가함(전월대비 0.2%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1.6%), 정밀기기 등 기계류(4.8%) 투자가 모두 늘어 9.4% 증가함(전월대비 1.9%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하였음.

◆ 2018년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함.

◆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3(2015년=100)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전월대비 0.7%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5.4%) 등 10개 부문에서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3.4%), 식품 이외(1.5%)에서 모두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함(전월대비 1.0%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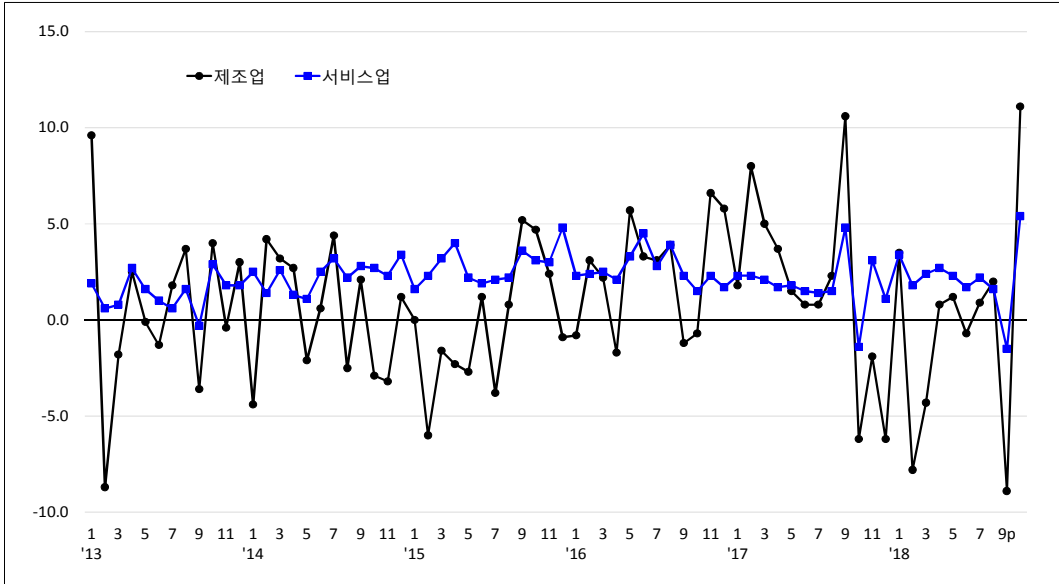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15	2016	2017	2016		2017			2018			2017 10월	2018		
					3/4	4/4	1/4	2/4	3/4	4/4	1/4	2/4		3/4p	9월p	10월p
생산	전산업	1.8	3.0	2.3	3.0	3.3	3.9	2.5	3.9	-0.7	0.7	1.2	-0.7	-3.0	-4.8(-1.2)	6.7( 0.4)
	광공업	-0.3	2.3	1.9	1.9	3.7	4.7	2.2	4.6	-3.8	-2.2	0.7	-1.7	-5.6	-8.4(-2.7)	10.7( 1.0)
	제조업	-0.3	2.4	1.6	1.8	3.8	4.8	1.9	4.6	-4.8	-2.8	0.5	-2.2	-6.2	-8.9(-2.1)	11.1( 0.8)
	건설업	5.0	15.4	10.1	14.5	17.7	17.7	13.6	12.7	-0.5	1.5	-3.4	-9.8	-1.9	-16.6(-3.5)	-3.5(-2.2)
	서비스업	2.9	2.6	1.9	3.0	1.8	2.2	1.7	2.5	-0.9	2.6	2.3	0.8	-1.4	-1.5( 0.1)	5.4( 3.3)
소비	소비재 판매	4.1	3.9	1.9	3.1	2.2	1.6	1.0	3.2	2.1	5.0	4.7	3.8	-0.5	0.4(-2.1)	5.0( 0.2)
투자	설비투자	6.9	-1.3	14.1	-4.7	5.9	18.2	17.8	20.6	2.0	9.4	-5.9	-13.6	-3.9	-19.1( 3.3)	9.4( 1.9)
물가		0.7	1.0	1.9	0.7	1.5	2.1	1.9	2.3	1.5	1.3	1.5	1.8	1.3	2.0(-0.2)	2.0(-0.7)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5년, 2016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포함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7년 10월, 2018년 9월, 10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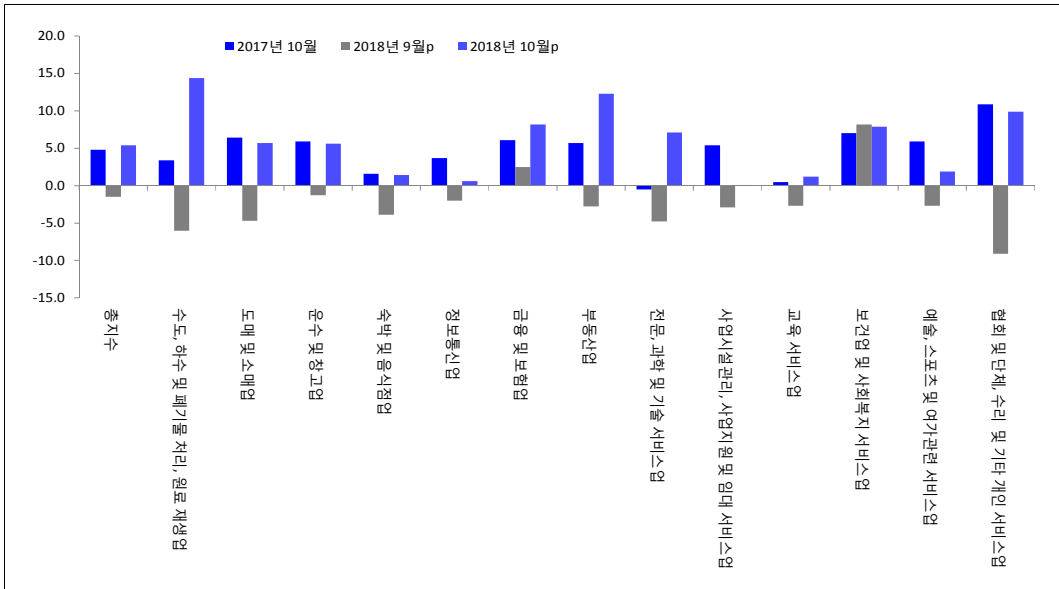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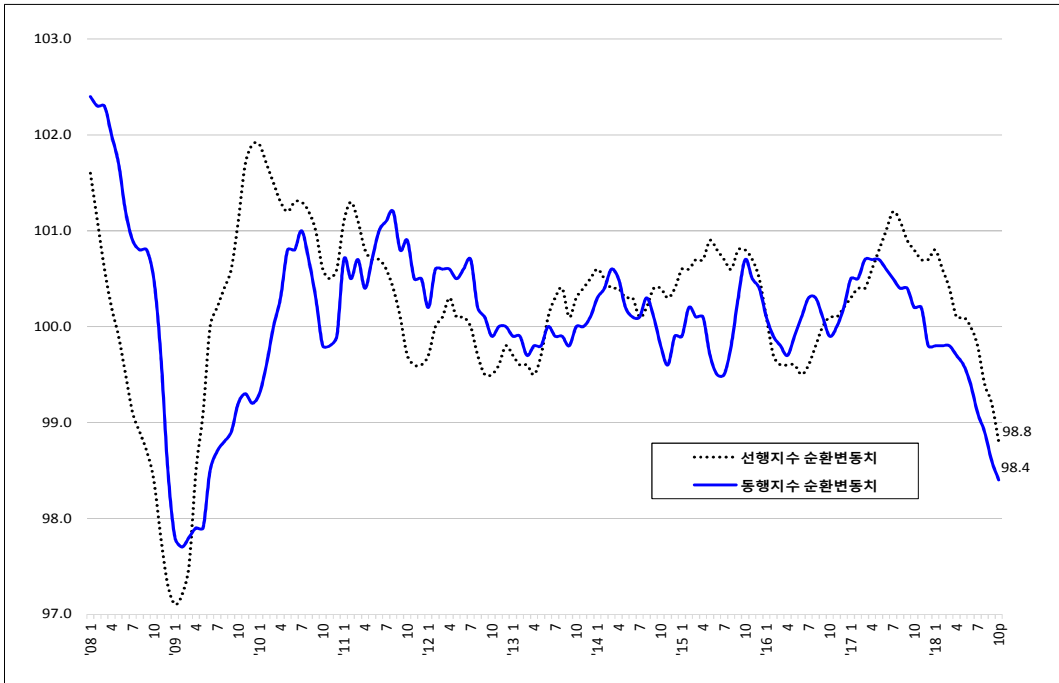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 고용 동향

### ◆ 11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65천 명 증가

- 2018년 11월 경제활동인구는 28,0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3천 명(0.7%) 증가함.
  - 취업자는 27,1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5천 명 증가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141천 명, 남성 취업자 수는 25천 명 증가하였음.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천 명 증가한 909천 명으로 실업률은 3.2%(0.1%p 증가)로 나타남. 그 중 남성 실업자(54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18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4%로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363천 명)는 20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0%를 기록했다.
- 2018년 1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3.4%)은 0.4%p 증가했고, 남성(73.8%)은 0.2%p 감소하였음.
- 2018년 11월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2~10월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71.3%를 기록했고,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51.8%를 기록했다.
  -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67.1%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한 76.2%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4%p 증가한 57.8%를 기록했다.
- 2018년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음(10월 105천 명 증가).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 감소하였고, ‘쉬었음’은 90천 명, ‘취업준비’는 69천 명 증가하였음. 반면 ‘통학’은 199천 명 감소(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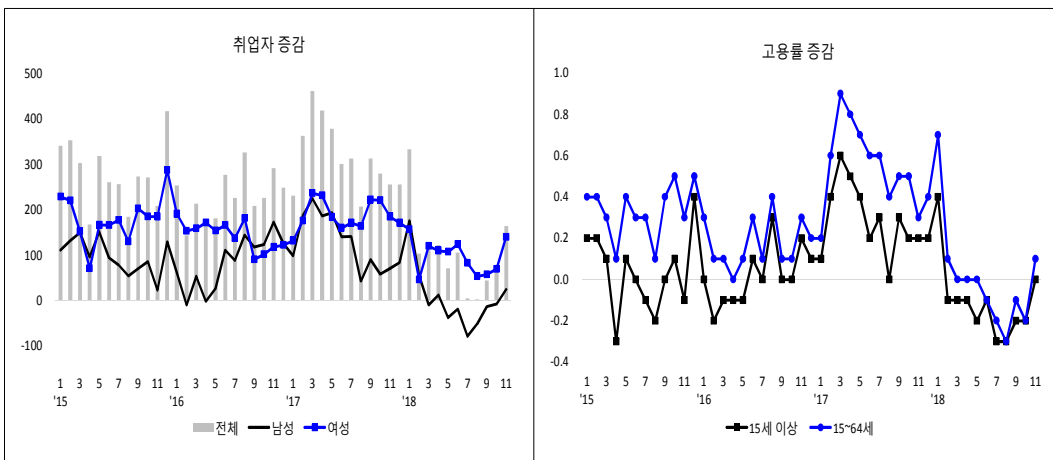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6	2017	2018		
					11월	11월	9월	10월	11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239	43,606	43,931	43,730	44,040	44,237	44,262	44,284
	(증가수)	(444)	(366)	(325)	(344)	(310)	(251)	(248)	(244)
	경제활동인구	27,153	27,418	27,748	27,613	27,889	28,079	28,063	28,092
	(증가수)	(318)	(265)	(329)	(315)	(276)	(137)	(143)	(203)
	취업자	26,178	26,409	26,725	26,762	27,019	27,055	27,090	27,184
	(증가율)	( 1.1)	( 0.9)	( 1.2)	( 1.1)	( 1.0)	( 0.2)	( 0.2)	( 0.6)
	(증가수)	(281)	(231)	(316)	(293)	(257)	( 45)	(64)	(165)
	(남성)	( 99)	( 85)	(127)	(174)	( 71)	(-13)	( -7)	( 25)
	(여성)	(182)	(146)	(189)	(119)	(186)	( 58)	( 70)	(141)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3.2	63.1	63.3	63.5	63.4	63.4
	(남성)	(74.1)	(74.0)	(74.1)	(74.1)	(74.0)	(73.9)	(73.8)	(73.8)
	(여성)	(51.9)	(52.2)	(52.7)	(52.6)	(53.0)	(53.5)	(53.4)	(53.4)
	고용률	60.5	60.6	60.8	61.2	61.4	61.2	61.2	61.4
	(남성)	(71.4)	(71.2)	(71.2)	(71.8)	(71.6)	(71.1)	(71.1)	(71.3)
	(여성)	(50.1)	(50.3)	(50.8)	(51.0)	(51.5)	(51.6)	(51.6)	(51.8)
	실업자	976	1,009	1,023	851	871	1,024	973	909
실업률	3.6	3.7	3.7	3.1	3.1	3.6	3.5	3.2	
(남성)	( 3.6)	( 3.8)	( 3.8)	( 3.1)	( 3.3)	( 3.8)	( 3.6)	( 3.4)	
(여성)	( 3.5)	( 3.6)	( 3.5)	( 3.1)	( 2.9)	( 3.5)	( 3.3)	( 3.0)	
비경제활동인구	16,086	16,187	16,183	16,117	16,151	16,158	16,199	16,192	
(증가수)	(127)	(102)	( -5)	( 29)	( 34)	(114)	(105)	( 41)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705	36,839	36,859	36,857	36,850	36,787	36,786	36,782
	(증가수)	(187)	(134)	( 21)	( 92)	( -7)	(-63)	(-65)	(-68)
	참가율	68.4	68.7	69.2	68.9	69.3	69.4	69.4	69.4
	(남성)	(78.9)	(78.9)	(79.3)	(79.0)	(79.2)	(79.0)	(79.0)	(79.0)
	(여성)	(57.9)	(58.3)	(59.0)	(58.6)	(59.2)	(59.7)	(59.6)	(59.7)
	고용률	65.9	66.1	66.6	66.7	67.0	66.8	66.8	67.1
	(남성)	(75.9)	(75.9)	(76.3)	(76.5)	(76.6)	(76.0)	(76.0)	(76.2)
	(여성)	(55.7)	(56.1)	(56.9)	(56.7)	(57.4)	(57.5)	(57.5)	(57.8)
취업자	24,192	24,341	24,559	24,566	24,700	24,566	24,588	24,671	
(증가수)	(249)	(149)	(218)	(158)	(135)	(-105)	(-91)	(-29)	

주 :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8. 12), 『2018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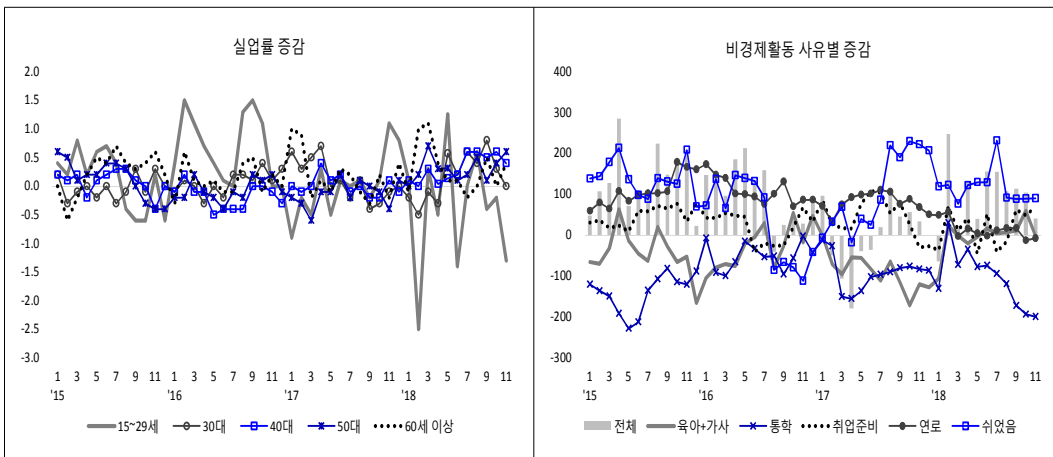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을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 20대 후반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18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111명, 3.1%) 연령층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10월 61천명 증가), 30대(-98천명, -1.7%), 40대(-129천명, -1.9%) 연령층은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50대(27천명, 0.4%), 60세 이상(270천명, 6.2%)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가 증가하였음.

- 20대 후반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2천 명 증가로 최근(10월 102천 명 증가)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20대 초반 취업자는 51천 명 감소함.
- 30대 연령층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10월 74천 명 감소)보다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30대 초반에서 취업자 감소가 확대됨.
- 60세 이상 연령층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10월 243천 명 증가)보다 확대되고 있음.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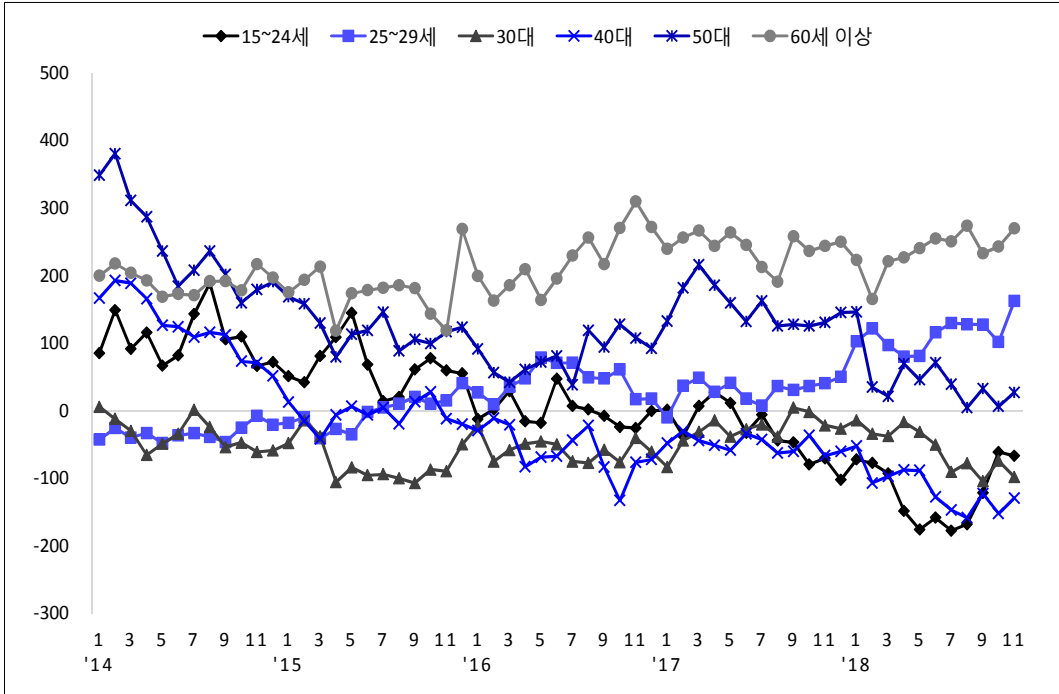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6	2017	2018		
				11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 체	26,178 (281)	26,409 (231)	26,725 (316)	26,762 (293)	27,019 (257)	27,055 ( 45)	27,090 ( 64)	27,184 (165)
15~19세	245 ( 0)	244 ( -1)	247 ( 3)	220 ( 2)	199 (-21)	194 (-39)	181 (-20)	183 (-16)
20~29세	3,619 ( 63)	3,664 ( 44)	3,660 ( -3)	3,647 (-10)	3,638 ( -9)	3,716 ( 45)	3,726 ( 61)	3,749 (111)
20~24세	1,402 ( 66)	1,402 ( 0)	1,368 (-34)	1,384 (-27)	1,335 (-49)	1,277 (-82)	1,300 (-41)	1,283 (-51)
25~29세	2,217 ( -3)	2,262 ( 44)	2,292 ( 30)	2,263 ( 17)	2,303 ( 41)	2,440 (128)	2,426 (102)	2,466 (162)
30~39세	5,729 (-76)	5,672 (-57)	5,643 (-29)	5,678 (-40)	5,656 (-22)	5,557 (-104)	5,565 (-74)	5,558 (-98)
30~34세	2,887 (-75)	2,732 (-156)	2,593 (-139)	2,690 (-146)	2,565 (-125)	2,499 (-74)	2,513 (-40)	2,494 (-71)
35~39세	2,841 ( -1)	2,940 (98)	3,050 (110)	2,988 (106)	3,091 (103)	3,058 (-30)	3,052 (-34)	3,064 (-27)
40~49세	6,892 ( -5)	6,832 (-59)	6,783 (-50)	6,859 (-76)	6,793 (-67)	6,663 (-123)	6,645 (-152)	6,664 (-129)
50~59세	6,068 (121)	6,150 ( 82)	6,302 (152)	6,275 (108)	6,405 (131)	6,375 ( 33)	6,394 ( 6)	6,432 ( 27)
60세 이상	3,625 (178)	3,848 (223)	4,090 (242)	4,084 (310)	4,328 (244)	4,551 (233)	4,579 (243)	4,598 (270)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8. 12), 『2018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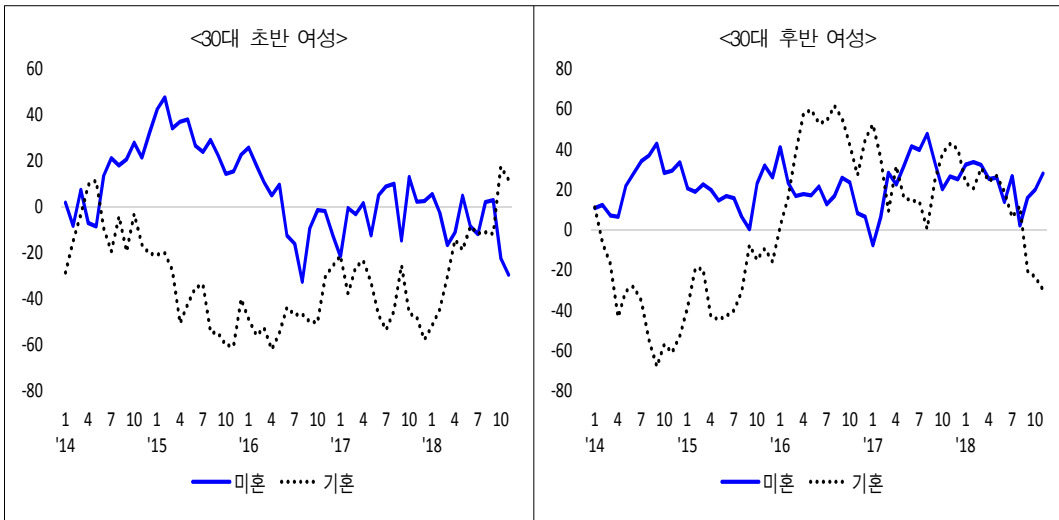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일용직 취업자 증가

- 2018년 1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0,4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8천 명(1.2%)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7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 명(-1.2%)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2017년 11월~2018년 10월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18년 11월 전년동월대비 21천 명 증가로 전환됨.
- 2018년 11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하였고(10월 4천 명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이 전월보다 둔화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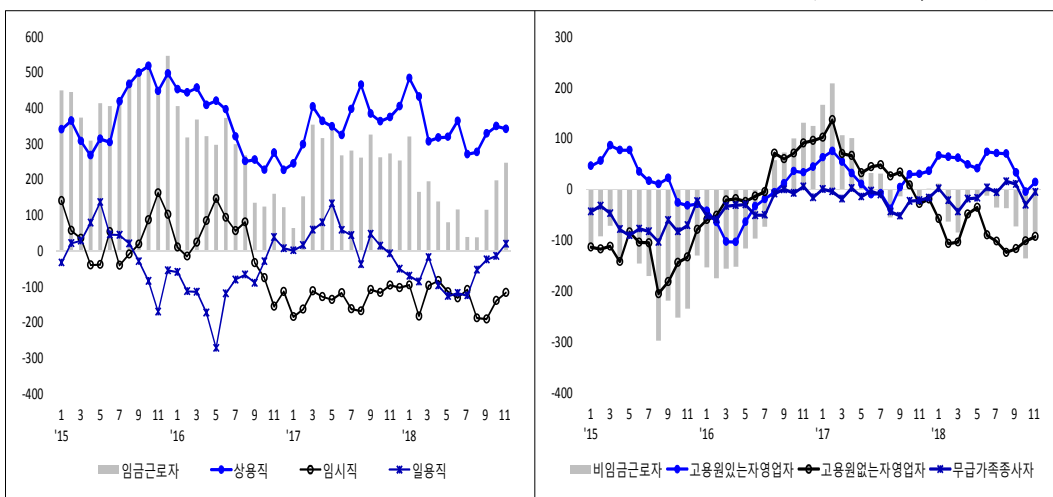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6	2017	2018		
				11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 체	26,178 (281)	26,409 (231)	26,725 (316)	26,762 (293)	27,019 (257)	27,055 ( 45)	27,090 ( 64)	27,184 (165)
비임금근로자	6,776 (-163)	6,740 (-36)	6,791 ( 51)	6,866 (132)	6,848 (-18)	6,849 (-72)	6,817 (-135)	6,765 (-8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9 ( 29)	1,584 (-25)	1,608 ( 24)	1,613 ( 34)	1,644 ( 31)	1,657 ( 34)	1,650 ( -4)	1,659 ( 1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13 (-126)	4,030 ( 17)	4,074 ( 44)	4,092 ( 92)	4,064 (-28)	4,022 (-117)	4,019 (-101)	3,972 (-92)
무급가족종사자	1,153 (-66)	1,126 (-27)	1,110 (-17)	1,161 ( 6)	1,139 (-21)	1,171 ( 11)	1,148 (-30)	1,134 ( -5)
임금근로자	19,402 (444)	19,669 (267)	19,934 (265)	19,896 (161)	20,171 (275)	20,206 (117)	20,273 (199)	20,419 (248)
상용근로자	12,716 (397)	13,062 (346)	13,428 (366)	13,178 (276)	13,554 (376)	13,849 (330)	13,859 (350)	13,897 (343)
임시근로자	5,114 ( 45)	5,124 ( 10)	4,992 (-132)	5,166 (-155)	5,071 (-95)	4,865 (-190)	4,906 (-138)	4,955 (-116)
일용근로자	1,572 ( 2)	1,483 (-88)	1,514 ( 31)	1,553 ( 39)	1,547 ( -6)	1,492 (-24)	1,509 (-13)	1,568 ( 21)
1~17시간	1,217 ( 44)	1,267 ( 50)	1,362 ( 95)	1,257 ( 8)	1,383 (126)	1,513 (164)	1,500 (197)	1,512 (129)
18~35시간	2,789 (-21)	3,220 (432)	3,051 (-159)	2,602 (-60)	2,781 (178)	3,002 (276)	2,913 (371)	3,101 (320)
36시간 이상	21,766 (265)	21,509 (-257)	21,930 (421)	22,605 (360)	22,569 (-36)	22,231 (-398)	22,377 (-501)	22,271 (-29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7	43.0	42.8	43.5	42.9	41.7	42.0	41.7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8. 12), 『2018년 11월 고용동향』.

- 취업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8천 명 감소하고, 18~35시간 취업자가 320천 명 증가한 영향으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2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감소폭 둔화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18년 11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69천 명, 59천 명 감소하여 10월(각각 100천 명, 97천 명)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됨.
  -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1천 명 감소(-2.0%)하여 최근(9월 42천 명 감소, 10월 45천 명 감소)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됨.
  - 그 외 사업시설·지원·임대업(-91천 명, -6.6%), 교육서비스업(-44천 명, -2.3%)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2018년 10월(각각 -89천 명, -15천 명)보다 확대됨.
  - 공공행정 및 국방(32천 명, 2.9%), 보건 및 사회복지업(164천 명, 8.2%)은 전월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10월 각각 31천 명, 159천 명 증가).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둔화양상에서 벗어나고 있고(10월 60천 명 증가), 관련 산업인 부동산업은 11천 명 증가함.
  - 정보통신업(87천 명, 11.2%)의 취업자는 2018년 1월 전년동월대비 증가로 전환된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9월 73천 명 증가, 10월 81천 명 증가).

〈표 4〉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2016	2017	2018		
				11월	11월	9월	10월	11월
전 산업	26,178 (281)	26,409 (231)	26,725 (316)	26,762 (293)	27,019 (257)	27,055 ( 45)	27,090 ( 64)	27,184 (165)
농림어업	1,337 (-109)	1,273 (-65)	1,279 ( 6)	1,351 ( 23)	1,354 ( 3)	1,490 ( 57)	1,493 ( 57)	1,438 ( 84)
광업	14 ( 1)	19 ( 5)	23 ( 4)	21 ( 4)	23 ( 2)	16 (-8)	15 (-8)	16 (-7)
제조업	4,604 (146)	4,584 (-21)	4,566 (-18)	4,549 (-112)	4,581 ( 32)	4,513 (-42)	4,515 (-45)	4,490 (-91)
전기·가스·증기	79 ( 9)	76 (-3)	72 (-4)	70 (-12)	72 ( 1)	67 (-4)	63 (-5)	64 (-8)
수도·원료재생	106 ( 1)	113 ( 8)	115 ( 2)	117 ( 12)	114 (-3)	139 ( 27)	139 ( 26)	132 ( 19)
건설업	1,854 ( 25)	1,869 ( 15)	1,988 (119)	1,973 (107)	2,045 ( 72)	2,060 ( 45)	2,090 ( 60)	2,118 ( 73)
도매 및 소매업	3,816 (-18)	3,754 (-63)	3,795 ( 41)	3,743 (-23)	3,789 ( 46)	3,719 (-100)	3,699 (-100)	3,720 (-69)
운수 및 창고업	1,429 ( 0)	1,426 (-2)	1,405 (-22)	1,414 (-19)	1,420 ( 7)	1,404 ( 2)	1,412 ( 5)	1,421 ( 0)
숙박 및 음식점업	2,195 ( 77)	2,291 ( 96)	2,288 (-3)	2,318 ( 71)	2,283 (-35)	2,212 (-86)	2,189 (-97)	2,224 (-59)
정보통신업	774 ( 55)	784 ( 10)	783 (-1)	817 ( 30)	779 (-38)	854 ( 73)	863 ( 81)	867 ( 87)
금융 및 보험업	799 (-53)	803 ( 4)	794 (-9)	820 ( 18)	807 (-13)	852 ( 51)	854 ( 49)	841 ( 33)
부동산업	462 ( 8)	483 ( 21)	540 ( 57)	506 ( 37)	539 ( 33)	544 ( 8)	538 ( 5)	549 (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55 ( 21)	1,101 ( 47)	1,092 (-9)	1,106 ( 15)	1,092 (-14)	1,104 ( 42)	1,096 ( 6)	1,109 ( 17)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31 ( 87)	1,391 ( 60)	1,374 (-17)	1,396 ( 35)	1,381 (-15)	1,271 (-130)	1,281 (-89)	1,290 (-9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948 (-22)	1,004 ( 55)	1,058 ( 55)	1,036 ( 28)	1,123 ( 87)	1,140 ( 27)	1,146 ( 31)	1,155 ( 32)
교육서비스업	1,835 ( 6)	1,862 ( 27)	1,907 ( 45)	1,904 ( 55)	1,902 (-2)	1,858 (-12)	1,870 (-15)	1,858 (-4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781 ( 73)	1,861 ( 80)	1,921 ( 61)	1,918 ( 85)	1,991 ( 73)	2,109 (133)	2,149 (159)	2,155 (164)
예술·스포츠·여가	428 ( 30)	407 (-21)	428 ( 22)	426 (-1)	440 ( 14)	445 ( 20)	432 (-0)	451 ( 11)
협회·단체·수리·기타	1,232 (-25)	1,224 (-8)	1,222 (-3)	1,201 (-46)	1,212 ( 11)	1,205 (-42)	1,198 (-32)	1,241 ( 3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82 (-34)	70 (-13)	64 (-5)	65 (-10)	64 (-1)	45 (-15)	41 (-18)	41 (-23)
국제 및 외국기관	19 ( 4)	16 (-2)	12 (-5)	14 (-5)	11 (-4)	8 (-5)	7 (-5)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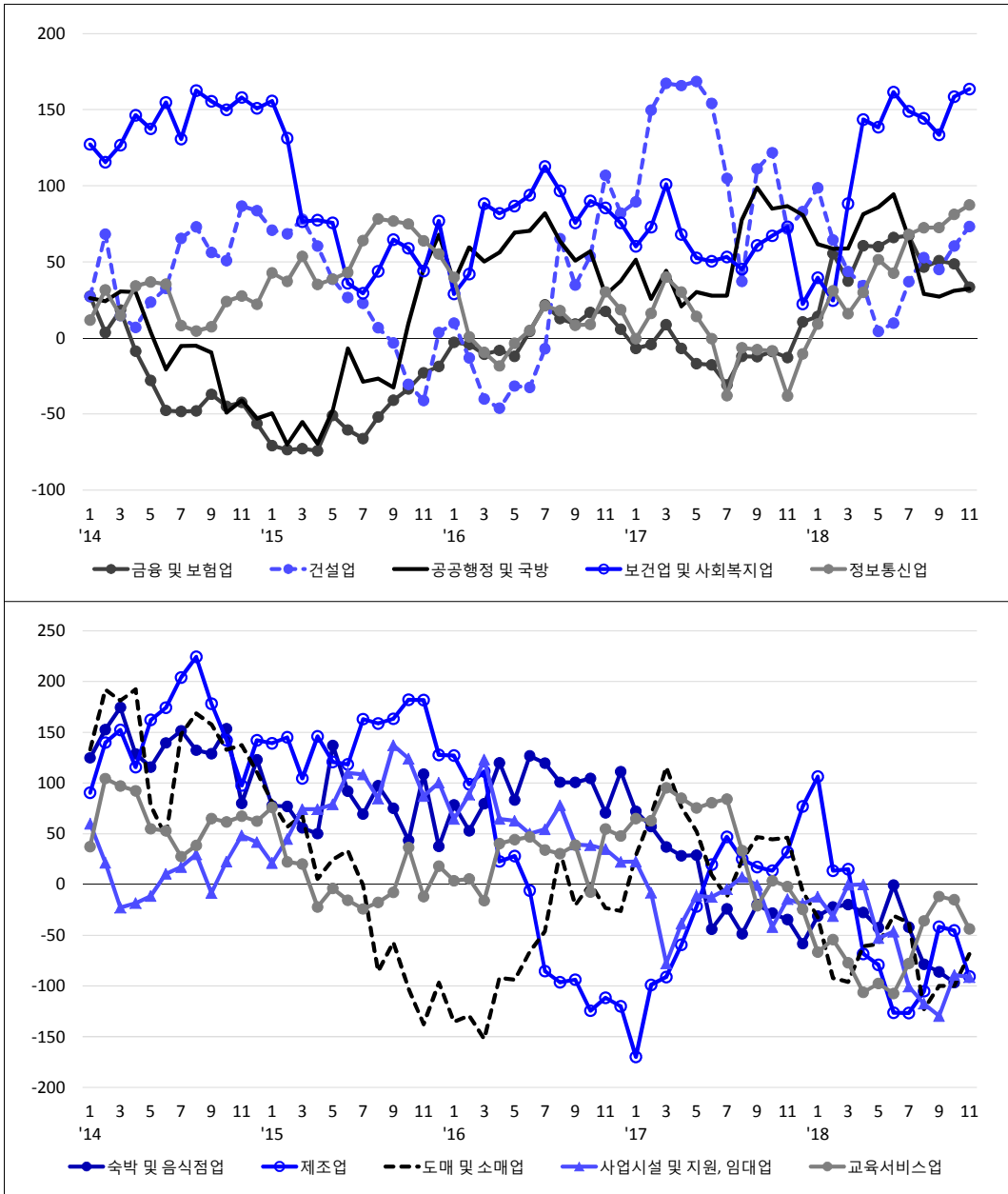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18. 12), 『2018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용빈, 동향분석실 연구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8년 9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2018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7천 원(4.1% ↑)임.
  - － 2018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3,880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한 1,417천 원임.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8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

### ◆ 2018년 1~9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5.7%, 4.3% 상승함

- 2018년 1~9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82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7%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와 정액급여의 증가가 컸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5.5% 상승한 3,596천 원임.
  -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5.4% 상승한 1,416천 원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 2018년 10월 협약임금 인상률 4.6%

- 2018년 10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6%로 전년대비 0.8%p 상승함.
  - － 2018년 6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33.9%로 전년대비 진행속도가 빠름.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1~9월	9월	1~9월	9월
전체 근로자	2,837	2,904	2,991	3,106	3,207	3,200	3,057	3,382	3,627
임금총액	( 3.4)	( 2.4)	( 3.0)	( 3.8)	( 3.3)	( 3.6)	( 4.0)	( 5.7)	( 4.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6	3,117	3,204	3,331	3,418	3,410	3,727	3,596
		( 3.3)	( 2.3)	( 2.8)	( 4.0)	( 2.6)	( 3.0)	( 4.5)	( 5.5)
	정액급여	2,433	2,506	2,580	2,668	2,764	2,749	2,752	2,877
		( 3.8)	( 3.0)	( 3.0)	( 3.4)	( 3.6)	( 3.5)	( 3.3)	( 4.7)
초과급여	154	170	181	189	190	189	187	194	
	( 1.3)	(10.5)	( 6.2)	( 4.2)	( 0.6)	( 1.4)	( 2.4)	( 2.6)	
특별급여	458	440	443	475	464	472	789	526	
	( 1.3)	(-4.0)	( 0.6)	( 7.2)	(-2.2)	( 0.5)	( 9.6)	(11.3)	
임시·일용근로자	1,247	1,253	1,281	1,288	1,353	1,344	1,370	1,416	
임금총액	( 3.3)	( 0.5)	( 2.2)	( 0.6)	( 5.1)	( 4.9)	( 8.1)	( 5.4)	
소비자물가지수	98.3	99.1	100.2	101.6	103.0	103.5	103.5	104.3	
	( 1.3)	( 1.3)	( 0.7)	( 1.0)	( 1.9)	( 2.0)	( 2.0)	( 1.4)	
실질임금증가율	2.1	1.1	2.3	2.8	1.3	1.4	3.2	4.3	
								2.0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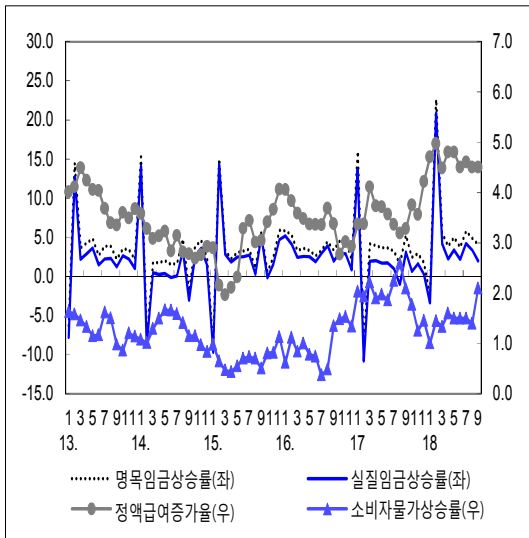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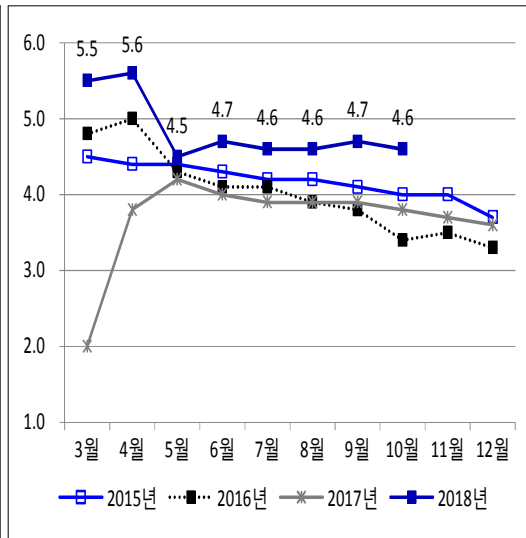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번 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8년 9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 상승폭 둔화

- 2018년 9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2.2%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고, 임시·일용직인 비상용직의 임금상승폭도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여 상용·비상용 모두 임금상승폭이 둔화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고, 비상용직의 임금도 2.9% 상승에 머물러 상용·비상용 모두 임금상승폭이 둔화됨.

◆ 2018년 1~9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큰 폭 증가

- 2018년 1~9월 평균 중소·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4.9%, 7.5% 상승함.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는 상용직의 정액급여(4.2%↑)와 특별급여(18.5%↑)의 증가에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기타운송장비(2016~2017년) 및 자동차 관련 산업(2017~2018년)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2018년 1분기, 7~8월)과 반도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5	2016	2017	2017		2018	
					1~9월	9월	1~9월	9월
중소 규모	소 계	2,661 ( 3.2)	2,759 ( 3.7)	2,886 ( 4.6)	2,875 ( 4.7)	3,131 ( 6.3)	3,015 ( 4.9)	3,266 (4.3)
	상용임금총액	2,661 ( 3.2)	2,759 ( 3.7)	2,886 ( 4.6)	2,875 ( 4.7)	3,355 ( 5.5)	3,213 (11.7)	3,499 (4.3)
	정액급여	2,414 ( 2.7)	2,495 ( 3.3)	2,602 ( 4.3)	2,589 ( 4.3)	2,591 ( 4.0)	2,711 ( 4.7)	2,712 (4.7)
	초과급여	148 ( 5.2)	160 ( 7.5)	164 ( 2.5)	163 ( 3.6)	162 ( 4.8)	169 ( 3.6)	170 (4.6)
	특별급여	291 ( 4.1)	310 ( 6.7)	316 ( 2.0)	318 ( 3.0)	602 (12.5)	332 ( 4.7)	617 (2.5)
	비상용임금총액	1,277 ( 2.4)	1,286 ( 0.7)	1,350 ( 5.0)	1,338 ( 4.7)	1,367 ( 7.8)	1,408 ( 5.2)	1,415 (3.5)
대규모	소 계	4,849 ( 3.7)	4,959 ( 2.3)	4,983 ( 0.5)	4,998 ( 1.4)	5,446 ( 3.8)	5,371 ( 7.5)	5,566 (2.2)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145 ( 0.3)	5,152 ( 1.3)	5,658 ( 3.6)	5,532 ( 7.4)	5,782 (2.2)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598 ( 2.3)	3,566 ( 1.9)	3,586 ( 1.9)	3,714 ( 4.2)	3,698 (3.1)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4 (-2.1)	321 (-2.0)	313 (-1.3)	319 (-0.8)	322 (2.7)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23 (-4.5)	1,265 ( 0.3)	1,759 ( 8.2)	1,499 (18.5)	1,762 (0.1)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00 ( 6.9)	1,425 ( 7.3)	1,403 (12.0)	1,538 ( 8.0)	1,44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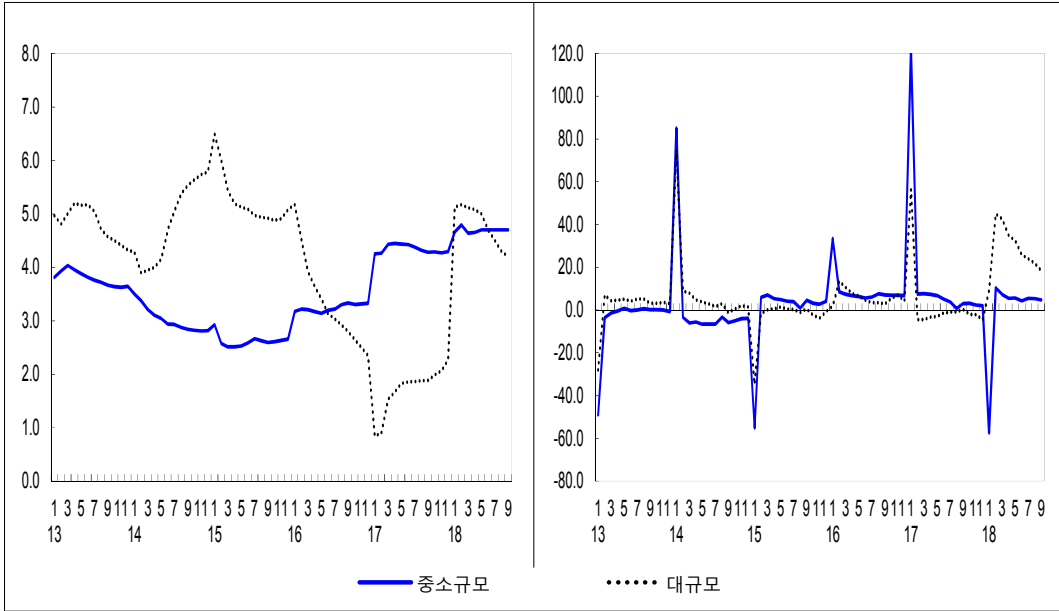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 지급(3월)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또한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 2018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증가

- 2018년 9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8.8%)이었으며, 다음으로 여가 관련서비스업(7.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7.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6.9%) 순으로 평균임금상승률(4.1%)을 크게 상회함.
  - 한편 광업(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8%) 등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9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102천 원)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1,833천 원)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1~9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8.4% 상승

- 2018년 1~9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8.4%)이었으며, 다음으로 운수업(7.2%), 금융 및 보험업(6.9%), 제조업(6.8%) 등이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한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1%)은 가장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1~9월 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389천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57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6	2017	2017		2018	
			1~9월	9월	1~9월	9월
전 산업	3,106 (3.8)	3,207 ( 3.3)	3,200 ( 3.6)	3,484 ( 5.3)	3,382 (5.7)	3,629 (4.1)
광업	3,678 (2.7)	3,713 ( 1.0)	3,742 ( 1.3)	4,161 ( 3.1)	3,868 (3.4)	4,237 (1.8)
제조업	3,603 (4.1)	3,690 ( 2.4)	3,682 ( 3.2)	4,035 ( 5.9)	3,933 (6.8)	4,215 (4.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300 (8.2)	6,281 (-0.3)	6,255 (-0.8)	9,803 ( 1.3)	6,389 (2.1)	10,102 (3.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78 (5.3)	3,089 ( 3.7)	3,065 ( 4.0)	3,389 ( 6.2)	3,240 (5.7)	3,628 (7.1)
건설업	2,507 (3.1)	2,624 ( 4.7)	2,619 ( 4.6)	2,789 ( 6.1)	2,775 (5.9)	2,976 (6.7)
도매 및 소매업	2,880 (3.9)	3,049 ( 5.8)	3,034 ( 6.2)	3,330 ( 9.9)	3,213 (5.9)	3,519 (5.7)
운수업	3,023 (4.9)	3,156 ( 4.4)	3,131 ( 4.0)	3,458 ( 7.1)	3,356 (7.2)	3,601 (4.1)
숙박 및 음식점업	1,570 (1.5)	1,626 ( 3.6)	1,621 ( 3.5)	1,686 ( 3.9)	1,757 (8.4)	1,833 (8.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78 (3.3)	4,122 ( 3.6)	4,110 ( 3.5)	4,451 ( 6.4)	4,298 (4.6)	4,577 (2.8)
금융 및 보험업	5,499 (4.0)	5,706 ( 3.8)	5,696 ( 3.3)	6,246 ( 4.3)	6,091 (6.9)	6,613 (5.9)
부동산 및 임대업	2,383 (5.7)	2,446 ( 2.7)	2,440 ( 2.8)	2,635 ( 4.7)	2,601 (6.6)	2,758 (4.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44 (5.8)	4,492 ( 1.1)	4,476 ( 2.7)	4,794 ( 3.3)	4,742 (5.9)	4,890 (2.0)
사업서비스업	2,049 (4.0)	2,088 ( 1.9)	2,079 ( 1.8)	2,227 ( 0.5)	2,199 (5.8)	2,333 (4.8)
교육서비스업	3,231 (1.1)	3,316 ( 2.6)	3,366 ( 1.8)	3,527 ( 1.9)	3,469 (3.1)	3,670 (4.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75 (3.4)	2,671 ( 3.7)	2,660 ( 3.4)	2,893 ( 3.1)	2,793 (5.0)	3,035 (4.9)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3 (5.2)	2,512 ( 6.8)	2,477 ( 6.0)	2,737 (10.6)	2,644 (6.7)	2,931 (7.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67 (5.4)	2,240 ( 3.4)	2,233 ( 4.2)	2,372 ( 3.3)	2,392 (7.1)	2,535 (6.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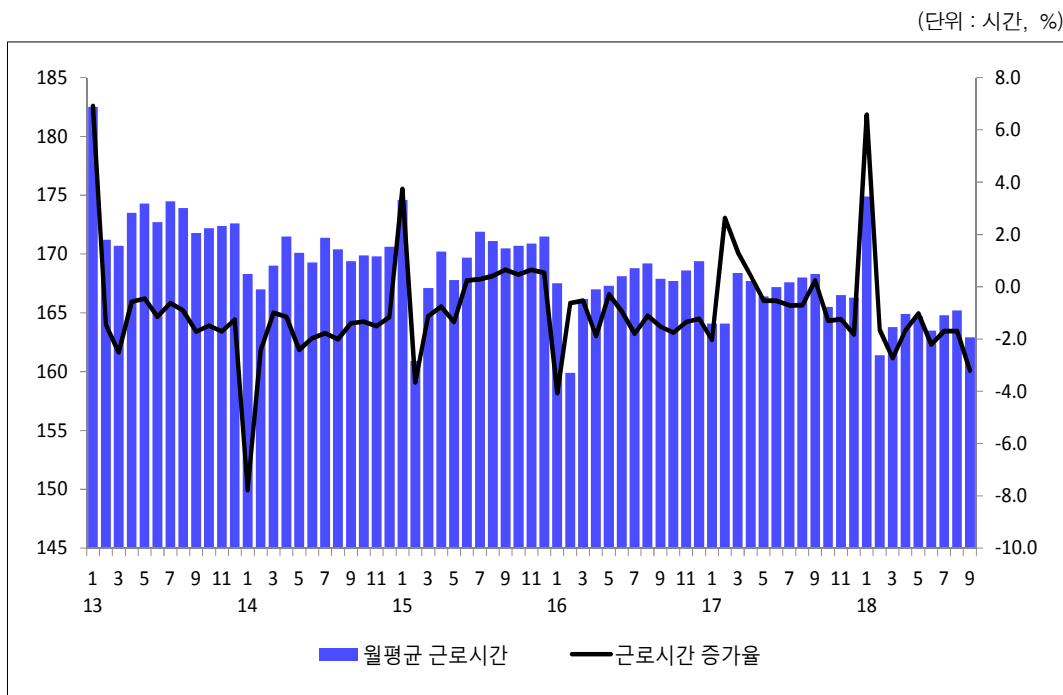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44.4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6.5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3.2일 감소)

- 2018년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168.4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한 175.8시간이었으며,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0시간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근로시간 감소는 추적이 2017년에는 10월 초에 있었던 반면 2018년에는 9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3.2일 감소한 영향이 큼.

◆ 2018년 1~9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0.6일 감소)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9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일수의 감소로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

- 2018년 9월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44.4시간(15.7% ↓), 대규모 사업체는 144.1시간(14.5% ↓)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 소정실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5.7% 감소한 135.8시간,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16.4% 감소한 141.9시간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한 8.9시간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11.9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경기상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 2018년 1~9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 사업체는 163.0시간(3.3% ↓), 대규모 사업체는 162.4시간(2.5% ↓)으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7		2018	
				1~9월	9월	1~9월	9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8 (-1.2)	166.6 (-1.9)	168.6 ( 0.2)	171.3 ( 8.3)	163.0 (-3.3)	144.4(-15.7)
	상용 총근로시간	178.4 (-0.7)	174.4 (-2.2)	176.5 ( 0.0)	179.6 ( 8.1)	170.8(-3.2)	150.8(-16.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8.3 (-0.9)	164.7 (-2.1)	166.7 ( 0.1)	169.8 ( 8.6)	161.8(-2.9)	141.9(-16.4)
	상용 초과근로시간	10.1 ( 2.0)	9.7 (-4.0)	9.7 (-3.0)	9.8 ( 1.0)	9.0(-7.2)	8.9( -9.2)
	비상용근로시간	108.6 (-5.9)	105.7 (-2.7)	106.5 (-2.4)	105.6 ( 3.1)	99.3(-6.8)	93.5(-11.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9 (-1.6)	164.4 (-1.5)	166.6 ( 0.5)	168.6 ( 9.8)	162.4(-2.5)	144.1(-14.5)
	상용 총근로시간	170.8 (-1.7)	167.7 (-1.8)	169.7 ( 0.4)	173.1 ( 9.6)	165.3(-2.6)	147.7(-14.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7.0 (-0.8)	155.4 (-1.0)	157.4 ( 1.4)	161.1(11.0)	153.8(-2.3)	135.8(-15.7)
	상용 초과근로시간	13.7(-11.0)	12.3(-10.2)	12.3(-10.9)	11.9(-7.0)	11.6(-5.7)	11.9( 0.0)
	비상용근로시간	85.5 (-1.6)	90.3 ( 5.6)	95.2 ( 6.5)	83.0(13.2)	91.6(-3.8)	75.4( -9.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9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산업에서 감소

- 2018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함.
  - 근로일수가 3.2일 감소함으로써 전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은 16%가 넘는 근로시간 감소를 보임.
  - 2018년 9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1.7시간)이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19.0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7		2018	
			1~9월	9월	1~9월	9월
전 산업	169.4(-1.2)	166.3(-1.8)	168.3( 0.2)	170.9( 8.5)	162.9(-3.2)	144.4(-15.5)
광업	177.9(-1.0)	175.8(-1.2)	177.6( 0.6)	179.0( 8.0)	174.6(-1.7)	155.7(-13.0)
제조업	183.1(-1.0)	179.8(-1.8)	182.0( 0.6)	186.2( 9.9)	175.6(-3.5)	155.8(-16.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7.7(-1.9)	164.9(-1.7)	167.5( 0.8)	174.2( 7.8)	162.7(-2.9)	161.7( -7.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1(-0.5)	177.1( 0.0)	178.7( 2.0)	181.9( 9.6)	176.3(-1.3)	159.9(-12.1)
건설업	142.0(-1.3)	141.9(-0.1)	144.0( 1.8)	144.5( 9.6)	137.6(-4.4)	123.9(-14.3)
도매 및 소매업	170.2(-1.9)	167.6(-1.5)	169.5( 0.3)	171.9( 8.9)	164.1(-3.2)	144.8(-15.8)
운수업	172.9(-0.9)	169.2(-2.1)	170.6(-0.8)	171.9( 5.1)	165.6(-2.9)	151.5(-11.9)
숙박 및 음식점업	165.7(-3.9)	160.4(-3.2)	161.3(-2.2)	162.5( 3.3)	158.9(-1.5)	148.6( -8.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2.8(-0.7)	160.9(-1.2)	163.4( 1.5)	166.7(10.9)	160.2(-2.0)	138.6(-16.9)
금융 및 보험업	162.9(-0.9)	160.5(-1.5)	163.3( 1.2)	165.7(10.2)	159.9(-2.1)	136.0(-17.9)
부동산 및 임대업	189.0(-1.3)	184.9(-2.2)	186.6(-0.5)	188.3( 5.4)	178.0(-4.6)	161.2(-14.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2.9(-1.2)	160.1(-1.7)	162.6( 0.9)	165.5(10.4)	159.1(-2.2)	137.2(-17.1)
사업서비스업	170.2(-0.6)	165.1(-3.0)	166.4(-1.1)	168.7( 4.1)	162.2(-2.5)	145.6(-13.7)
교육서비스업	147.5(-2.1)	144.4(-2.1)	147.3( 0.3)	148.0( 9.1)	141.7(-3.8)	119.0(-19.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8.2(-1.5)	164.5(-2.2)	166.4(-0.2)	169.3( 8.4)	161.3(-3.1)	141.9(-16.2)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2( 0.2)	159.5(-0.4)	160.5( 0.9)	163.6( 8.9)	156.9(-2.2)	140.4(-14.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6(-0.5)	164.2(-2.0)	165.9(-0.3)	168.6( 8.7)	161.0(-3.0)	142.8(-15.3)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1~9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4.6% ↓)이었으며, 동 산업은 여전히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나타남.
  - － 동 기간 근로일수는 19.8일로 0.6일 감소하였으며, 2018년 1~9월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7.6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1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063건
  - － 1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797건)보다 266건 많은 수치임.
- 11월 조정성립률 47.8%
  - － 1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7.4%에 비해 9.6%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7년, 2018년 1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8. 11	1,063	985	426	183	243	466	29	437	15	78	78	47.8
2017. 11	797	759	395	172	223	293	45	248	13	58	38	57.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1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3,110건
  - － 9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1,845건)보다 1,265건 높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1,45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7%(9,711건)를 차지함.

〈표 2〉 2017년, 2018년 1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8. 11	13,110	11,164	1,268	185	1,876	749	3,761	3,325	1,945
2017. 11	11,845	10,230	1,141	175	1,784	682	3,624	2,824	1,61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534건

-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679건)보다 145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50.2%(25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49.8%(254건)를 차지함.

〈표 3〉 2017년, 2018년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8. 11	534	510	248	8	73	27	154	0	24
2017. 11	679	652	69	5	44	22	512	0	2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삼성 ‘반도체 백혈병’ 공식사과

○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공식 사과 ... 2028년까지 보상

- 지난해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반도체 사업장에서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제시한 이행합의 협약서에 서명함.
-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직업병과 관련해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과한 것은 2014년 5월 권오현 회장 시절 이후 4년 6개월여 만임.
- 이날 협약식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합의한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정했고,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장을 맡아 중재안을 만든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기로 했음. 또한 삼성전자가 별도로 출연하는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기탁할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정했음.
- 보상 범위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했음.
-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했음. 그 이후의 지원보상은 10년 후 별도로 정하기로 함.



- 지원보상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16종의 암 ... 지원 보상액은 최대 1억 5,000만 원
  - 지원 보상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 관련 논란이 된 암 중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포함하기로 함.
  - 희귀암 중에서 환경성 질환은 모두 포함하며, 다발성 증후군,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도 포함하였음.
  -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정해졌음.
  - 조정위 측은 “이번 중재의 기초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함.

◆ 삼성화재 현장출동 노동자 사무연대노조 가입

-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사무연대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힘.
- 지부 조합원들은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1년 단위로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
- 월평균 노동시간은 380시간에 달하며, 2교대 24시간 출동대기고, 차량과 유류비, 통신비 등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 여기에 사고조사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여 자비로 치료하고, 특히 이들은 기본급 없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처리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 수수료는 동결되었음.
- 최근 회사는 현장 출동을 협력업체인 공업사들에 맡기는 방식으로 외주화하였음.
- 2016년 300여 명이었던 노동자가 최근 150명으로 줄고, 외주화로 출동건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야 하는 신분으로 고용불안에 지친 이들은 지난해 10월 23일 노조를 만들어 사무연대노조에 가입함.
- 지부는 △직접고용 △출동차량, 유류비, 보험료, 통신비 등 지급 △인력충원과 3교대 근무 △수수료 인상, 노사가 수수료 협상 등을 요구함.

### ◆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로 노조설립

- 지난해 11월 18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노동자들은 11월 15일 설립총회를 열고 노조 삼일회계법인지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힘.
- 회계사가 주축인 지부는 황병찬 씨를 지부장으로 선출했고, 노조 이름은 에스유니온(S-Union)으로 정했음.
- 회계법인 노조 설립 추진 배경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상한제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노조를 설립함.
-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감사 업무가 몰리는 1~3월, 7~8월에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량근로제가 도입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회계사 임금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 황병찬 지부장은 “노조 설립 도화선이 된 것은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회사의 부당한 개입과 회사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며 “이런 부당함을 향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 의견을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의견이 모아져 사무금융노조 산하 지부로 출범했다”고 밝힘.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개 노조 2019년 3월 통합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에서 노조통합선거를 진행, 개표작업을 거쳐 금년 3월부터 단일노조를 출범하기로 하였음.
- 새 노조의 명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으로 기존 노조들의 명칭을 일렬로 나열하는 형태임.
-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대한주택공사 출신 노조(중복포함 조합원 4,400명)와 한국토지공사 출신 노조(3,500명)가 그동안 양립해 왔고, 2015년부터는 LH 신규사원으로 구성된 LH통합노조(1,600명)까지 설립돼 ‘3대 노조’ 체제가 형성되었음.
- 그동안 3개 노조는 각각의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단결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칠 경우 역량이 분산되거나 노조 간 갈등을 겪기도 하였음.
- LH 내 각 노조는 금년 3월 6일 통합노조를 출범시키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집행부 임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고, 이후 2020년 12월 차기 집행부는 주공과 토공 양측에서 선출한 공동위원장으로, 2023년 차기 집행부는 통합노조 단일 집행부를 선출해 구성할 예정이다.

◆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위원장에 김인철 후보 당선

-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지난해 11월 6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음.
- 선거인 6,285명 가운데 5,320명(84.65%)이 투표에 참여하여 기호 2번 김인철 후보가 과반인 2,669표(50.17%)를 획득함.
- 노조는 이번 선거에서 위원장·수석부위원장·포항부위원장·광양부위원장·포항사무국장·광양사무국장 등 6명을 선출했음.
- 김인철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31일 임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물가상승률 반영한 임금인상 △임금피크제·호봉정지 폐지 △자녀장학제도 및 근속휴가 개선 △통상임금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5조3교대제 실시를 공약함.
- 임기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년임.

◆ 포스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등 5명 ‘해고·징계’

- 포스코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대정 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A사무장, B기획부장 등 간부 2명은 권고해직, C정책부장과 D지도위원 등 2명은 2~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의 중징계를 내렸음.
- 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연휴기간을 틈타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방해할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서류와 직원 수첩 등을 확인한 뒤 돌려줬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함.
- 이들은 당일 사측의 신고로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
- 포스코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노사관계 상황상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해명함.
- 지회는 회사가 사측에 우호적인 기업노조 비대위의 확대를 지원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봤고, 이 문건을 토대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27명을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자동차노련, “버스 공공성 강화로 2019년 버스대란 막아야”

- 지난해 11월 12일 자동차노련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년 7월 버스대란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 버스위원회를 설치해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와 교통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
- 연맹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버스환승손실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것도 요구함.
  -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노선버스운송업은 지난해 7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채용과 근무체계 개편이 불가피하여, 국토교통부는 버스 업종별 공공성 강화 대책을 제시했는데 적자노선 조정·지원과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편이 주요 내용임.
  - 연맹은 버스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국가 재정지원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을 요구함.

#### ◆ 카카오, 택시 이어 대리업계와도 갈등

-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5일 유료 요금제인 카카오T대리 ‘프로서비스’를 출시, 월 2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카카오와 제휴한 대리업체 콜은 물론, 매일 2개의 단독배정권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20%의 수수료는 별개로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임.
-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함.
-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 프로서비스, 프로그사제 등 일방적인 정책을 단행하여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다”면서 “급행료를 낸 기사에게 별도 콜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기사에게 일거리를 꿔줬다는 협박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인 만큼 더욱 악질적 수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카카오 모빌리티는 “프로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기존 대리 업체들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양한 업체에 분산된 콜을 한데 모아서 연결해 주는 대신 비용은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해명함.

#### ◆ 카카오,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13일 “택시업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지난해 12월 10일 한 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카풀 도입에 항의하며 분신하자, 택시 4단체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카풀에 대한 항의 수위가 높아짐.

- 당초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일부 제한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서비스를 우선 개시한 뒤 열흘 뒤인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모든 이용자가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당분간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만 운영함.
- 카카오는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총파업

-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에 조합원 16만여 명이 함께했다”고 밝혔고, 그 중 금속노조에서 12만 8,277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힘.
-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 △광주형 일자리 폐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할 권리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요구함.

◆ 생활체육지도자들 “미사용 연차수당 예산 편성하라”

-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법정수당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는 2,600여 명이고 노조에 따르면 “대체인력 인건비가 없어 일부 지역 체육회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개인 일정상 바빠서 연차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밝힘.
- 노조는 “지자체와 정부·체육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일할 환경을 보장받도록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법원 “반도체 불량검사하던 노동자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 지난해 12월 4일 반올림에 따르면, 2018년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심홍걸)은 삼성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음.
- 법원은 웨이퍼를 직접 가공하는 공정이 아니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 법원은 “A씨가 근무 내내 웨이퍼를 수거하기 위해 제대로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웨이퍼 가공공정에 수시로 출입하거나 체류했을 것”이라고 판시함.
- 이어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일정한 시기 각 공정, 작업 장소별로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작업환경측정 결과로서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산업 여성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2.7배 높게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 ◆ “디젤차량 배기가스 노출로 폐암” 순천 환경미화원 2명 산재승인

- 근로복지공단 순천시지사는 2018년 11월 12일, 순천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환경미화원 서 씨(61)와 황 씨(62)가 낸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음.
- 서 씨와 황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20년 넘게 일하며 디젤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지난해 1월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음.
- 두 명 모두 주 6일(2014년 이후 토요일은 오전 근무) 하루 8시간씩 디젤 배기가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됐고, 중량제 도입 전까지는 폐슬레이트와 연탄재를 자주 수거했음.
- 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역학조사를 했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7일 “이들이 20년 이상 거리청소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리규산이나 석면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음.

#### ◆ 택배노동자 매년 한 명 이상 산재로 목숨 잃어

- 지난해 11월 15일 김종훈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배업종 산재 집계를 시작한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894건의 산재가 발생했다고 밝힘.
- 넘어짐 사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밖 교통사고가 144건, 떨어짐 사고 136건, 끼임 사고가 100건이었으며, 업무상질병은 91건이었음.
- 산재사망자는 총 16명이고, 2015년에 3명, 2017년에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18년은 8월까지 3명이 사망함.
-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은 5명이었음.
- 택배사업자별로는 경동택배가 223건으로 1위, 대신택배 59건, CJ대한통운이 22건이었음.
- 김종훈 의원은 “신고되지 않은 산재를 감안하면 실제 산재는 더 많을 것”이라며 “사고

외에 업무상질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택배업의 살인적인 업무량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표 4〉 택배 산재사고 유형별 건수

	총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맞음	끼임	절단 베임 잘림	갈림 뒤집힘	불균형 및무리 한동작	사업장 외교통 사고	업무상 질병	체육 행사	기타
2012	72	15	15	7	9	7	0	1	2	8	5	2	1
2013	141	19	35	5	3	18	1	6	12	26	13	1	2
2014	160	16	26	17	8	23	2	3	11	40	13	1	0
2015	147	22	25	13	16	21	0	3	9	19	17	0	2
2016	125	23	20	17	18	11	0	3	9	12	11	0	1
2017	135	23	20	10	13	13	4	3	15	17	16	0	1
2018.8	114	18	21	12	8	7	1	0	8	22	16	1	0
합계	894	136	162	81	75	100	8	19	66	144	91	5	7

자료 : 고용노동부/김종훈 의원실 재구성.

〈표 5〉 택배 현장 산재사망사고 현황

연번	연도	사업장명	총계	갈림뒤집힘	교통사고	업무상질병
1	2012	제니엘시스템충청지역	1		1	
2	2013	(주)국제정보통신 경인지사	1		1	
3	2014	김해한림김해 927	1	1		
4	2014	바리익스프레스	1		1	
5	2015	경동택배(충주엄정울능영업소)	1			1
6	2015	경동택배음성삼성덕정	1			1
7	2015	대신정기화물파주조리	1			1
8	2016	에스오케이물류(주)	1			
9	2017	대전국제	1		1	
10	2017	경동택배 고양일산동구장항618	1			1
11	2017	경동택배대구수성지산	1			1
12	2017	로젠논산	1			1
13	2017	비디에스코리아	1			1
14	2018.8	(주)아이디일일구닷컴_택배업	1			1
15	2018.8	곡성로젠택배	1		1	
16	2018.8	시흥(대)한진택배	1			1
합계			16	1	5	9

자료 : 고용노동부/ 김종훈 의원실 재구성.



### ◆ 공공기관 3%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유효기간도 2023년까지 유지됨.

### ◆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 11월 29일,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보장하고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8월에 시행됨.
- 개정안은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과 임금 같은 노동조건을 서면계약에 명시하도록 했음.
-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며, 재임용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 소청심사권을 부여했음.
- 또한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국회 교육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보따리장수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 인천시 2019년 생활임금 시간당 9,600원

-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18일,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지난해 11월 16일, 양대 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경총·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단체와 인천시·인천시의회가 참여한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2018년 생활임금(8,600원)보다 1,000원(11.6%) 인상하기로 결정함.
- 생활임금위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2018년까지는 인천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에만 적용했으나 금년부터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됨.
- 현재까지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내년 생활임금은 서울(10,140원), 경기 부천시(10,030원), 광주광역시(10,090원), 전라남도(10,000원), 경기 수원시(10,000원), 경기 군포시(10,000원), 충청남도(9,700원), 대전시(9,036원)임.



### ◆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계약서 작성 '허술'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로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근로계약은 허술했으며, 건설노동자 절반(49.9%)이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만 했고, 근로계약을 구두로 통보받거나(10.6%)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고(5.1%), 계약서를 직접 보고 읽으면서 작성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 건설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48.2세, 건설노동자 10명 중 9명(85.6%)이 팀장·반장 기능공 같은 인맥으로 일감을 구했음.
-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6만 5,000원의 일당을 받았고, 연평균 225.1일 일하고 3,429만 원을 벌었음.
- 근무 관련 불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강도(3.67점) 불만족이 가장 높았고, 복리후생(3.65점)과 현장 위험성에 대한 불안(3.63점), 임금(3.60점)이 뒤를 이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